##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78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문진석・민홍철・윤호중

김문수 · 한정애 · 이건태

박정현 • 이재관 • 조인철

강준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사업을 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수입·수출 정책과 보조금 제도로 인하여 낮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실제 대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 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	제23조의4(공급망안정사업의 선
정 등) ①・② (생 략)	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	③
망안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국내 소재・부품・장비분
	야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